

감 사 원

심 사 결 정

분 류 번 호 2018-심사-409

제 목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A)
경상남도 진주시
대리인 ○○주식회사 관리차장 B

처 분 청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 C(이하 “재해자”라 한다)는 2017. 8. 25. 15:30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 구내식당”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식판을 옮기다가 어깨가 뜨끔하는 통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이 있는 후 같은 해 9. 27. “좌측 견관절 극상건²⁾ 완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같은 날 처분청에 요양급여(구분: 최초요양)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재해의 경위 및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재해조사, 의학적 자문 및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병판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등을

1)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2) 극상건: 어깨 뒤쪽에 붙어 있는 근육의 일종(가시위근 또는 극상근이라고도 함)

거쳐 2017. 12. 19.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의 지급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재해자는 청구인에게 2017. 5. 30. 고용된 후 3개월 정도 된 같은 해 8. 25. 이 사건 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9. 27. 최초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재해자가 근무할 당시에 아프다고 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재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청구인에게 2017. 5. 30. 조리원으로 고용되어 같은 해 8. 25.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방 보조일을 하였고, 같은 해 8. 28. 사직처리되었다.

2) 이 사건 재해의 경위에 대한 재해자 등 관련자의 진술내용 및 처분청의 조사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이 사건 재해 경위에 대한 관련자 등의 진술 및 조사 내용

구분 (작성자)	내용	날짜
요양급여신청서 (재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8. 25. 점심을 먹고 한 시간 휴식 후 식판을 옮기던 중 15:30경 왼쪽 어깨가 뜨끔했음 - 함께 일하는 찬모와 D에게 어깨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는 무거운 것을 들고 언니는 가벼운 것을 드는데 왜 뜨끔했냐고 했음 	'17. 9. 27.
보험가입자 의견 (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자는 아프다고 한 적 없음 -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입사했으며, 내부갈등으로 사직함 	'18. 2. 5.
문답확인서 (영양사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사 시 팔이 아프다는 말 외에 퇴사하겠다고 하여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퇴직처리하였으나 한 달 후 아프다는 연락이 옴 - 재해자와 함께 일하는 D은 재해 현장을 보지는 않았고 퇴근 무렵에 재해자로부터 아프다는 말을 들었다 함 	'17. 10. 18.
재해 조사서 (처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자는 식당의 조리종사원으로서 식판을 세척하거나 옮기는 과정 중에 팔을 들어올려서 식판을 옮기며, 보통 10개씩 들어서 이동하므로 6kg 정도의 하중이 걸리게 됨 - 하루 식사하는 인원이 300명을 상회하므로 식기 세척, 운반, 적재 등의 과정에서 비슷한 자세를 수백회 반복하고 있음 - 현재 작업장의 종사기간은 길지 않으나 약 20년 가까이 비슷한 직종에 근무한 경력을 감안할 때 상기 상병은 작업과의 관련도가 크다고 판단됨 	'17. 11. 29.

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은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구분 (의료기관명)	내용	날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병명: 좌측 견관절 극상견 완전 파열 ▶ 상기 병명 확인. 보존적 치료 및 수술적 치료 요함 	'17. 9. 27.

구분 (의료기관명)	내용	날짜
소견 조회(회신)서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진일시: '17. 8. 28. ▶ 확진일시: '17. 8. 30. ▶ 석회화 건염과 파열이 혼재된 상태로 외상 여부는 판단 불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회부분은 외력의 영향과 연관 없음. 다만 외력이 정확하다면 석회부분은 탄력이 떨어지므로 쉽게 파열될 수 있음 - 파열부분에 석회 침윤이 다량 진행되어 있었으며 수술 시 파열이 오래 방치된 것으로 추정됨(석회와 혼재됨). 일반적 급성 외상성 파열과는 양상의 차이가 있음 	'17. 10. 13.
자문의 소견서 (처분청)	▶ MRI 소견상 좌측 견관절 극상건의 파열이 증명됨	'17. 10. 10.

4)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재해자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재해자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상병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진료받은 기록은 없다.

5) 2017. 12. 14. 질병판정위원회는 [표 3]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표 3]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건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공통의견은 “재해자는 김치통과 식자재 등의 중량물의 반복적 취급과 장기간 조리 종사자로 종사한 기간, 통상적인 조리종사원들의 작업내용 등을 고려 시 장기간 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재해자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완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³⁾

위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동료근로자(영양사 E)의 문답확인서에 따르면 동료근로자는 재해자가 퇴사 시 팔이 아프다는 말을 하면서 퇴사하겠다고 하여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하고 퇴직처리하였으나 한 달 후 재해

3)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자로부터 아프다는 연락이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재해자와 함께 일하는 D은 이 사건 재해 현장을 보지는 않았지만 퇴근 무렵에 재해자로부터 아프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인정사실 “2)항” 및 “3)항”의 내용과 같이 재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재해 경위와 재해자가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방문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지에 기재된 수상 경위가 일치하는 점, ③ 인정사실 “4)항”의 내용과 같이 재해자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부위에 진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④ 인정사실 “3)항” 및 “5)항”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소견을 토대로 산재보험법 제38조에 따라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 05 . 09 .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7. (생략)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생략)

○ 제42조(자문의사)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진료비 또는 약제

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공단의 직원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자문의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43조(자문의사회)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과 관련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자문의사회의를 둔다.

② 자문의사회의는 자문의사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의사회의는 공단의 자문에 응하여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하 생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생략)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